

공경의집 운영규정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1.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

- 1) 입소정원은 68인(입소정원 변경 시 신고 된 입소정원)으로 한다.
- 2) 모집방법은 공경의집 홈페이지 및 게시판, 노인장기요양보험·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한다.

2. 이용대상

공경의집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수급자(이하 “수급자”라 한다)로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.

3. 급여계약 등에 관한 사항

- 1) 급여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(이하 “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- 2) 수급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함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일반원칙을 명시하여 상호신뢰하에 수급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계약의 목적이 있다.
- 3)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.
- 4)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거나 비급여비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.
- 5) 입소비용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.

2026년 요양보호사 2.3:1 기준적용시 (2.89%)	등급	등급 단가	총금액	본인부담분			비급여		총금액		
				일반(20%)	경감(12%)	경감(8%)	식대료 (143,500원)	간식비 (1일, 400원)	일반(20%)	경감(12%)	경감(8%)
	1등급	88,520	2,655,600	531,120	318,670	212,440	315,000	42,000	888,120	675,670	569,440
	2등급	82,120	2,463,600	492,720	295,630	197,080	315,000	42,000	849,720	652,630	554,080
	3~5등급	77,540	2,326,200	465,240	279,140	186,090	315,000	42,000	822,240	636,140	543,090

2026년 요양보호사 2.1:1 기준적용시 (2.90%)	등급	등급 단가	총금액	본인부담분			비급여		총금액		
				일반(20%)	경감(12%)	경감(8%)	식대료 (143,500원)	간식비 (1일, 400원)	일반(20%)	경감(12%)	경감(8%)
	1등급	93,070	2,792,100	558,420	335,050	223,360	315,000	42,000	915,420	692,050	580,360
	2등급	86,340	2,590,200	518,040	310,820	207,210	315,000	42,000	875,040	667,820	564,210
	3~5등급	81,540	2,446,200	489,240	293,540	195,690	315,000	42,000	846,240	650,540	552,690

※ 기타 비급여 항목 : • 상급침실 이용료(집중치료실 포함) • 뇨설금펜티기저귀 •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및 간식 구입 비용

4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와 의무

1)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

-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
-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연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
-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,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- ⑩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, 외출에 관한 권리

2)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

-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,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-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
-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, 집기 등의 오손, 파손 등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

5. 계약해지

수급자 및 계약자(보호자)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사항을 공경의집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수 있다.

- 1)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- 2)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- 3) 수급자의 입소비용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
- 4)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
- 5) 기타 이 계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
6. 퇴소

- 1) 시설장은 수급자가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수급자나 계약자(보호자)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2) 수급자와 계약자(보호자)가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경의집에 제출하고 수급자의 사유물품(보관물품)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. 단, 퇴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나 계약자(보호자)에게 통보한 후 공경의집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.